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노인요양시설 화재사례 및 대책

글 김은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컨설팅팀 대리

1. 머리말

지난해 11월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센터의 화재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덕노인요양센터에는 총 27명(1층 11명, 2층 16명)의 중증치매 및 중풍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생활하는 시설이며, 1층은 특히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1층에서 수면 중인 11명의 노인 중 10명이 사망하였으며, 동 사망자는 모두 유독성 가스에 의해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2층에서 수면 중인 16명 중에 사망자는 없었다.

가. 일반사항

- (1)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2 인덕노인요양센터
- (2) 발화일시 : 2010년 11월 12일(금) 04:10 경
-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동 2/0층
- (4) 인명피해 : 사망 10명, 부상 17명(중증치매 및

중풍환자 등)

- (5) 발화지점 : 1층 사무실 분전반 주위(추정)
- (6) 발화원인 : 전기적 원인(추정)

나. 건물현황

인덕노인요양센터는 포항시 소유의 건물로서, 1973년 제철동사무소로 건립되어 2007년 9월 5일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허가일: 2007.9.5, 사용승인일:2007.12.26) 후, 2008년 3월 동 노인요양센터로 사용되어 왔으며, 입소자 27명과 사회복지사 8명 등 총 36명이 생활하던 요양시설이었다.

구분	1층	2층
면적	197,32㎡	190,1㎡
용도	노인생활실 2개소, 사무실 1개소, 창고 1개소, 화장실 1개소, 보일러실 1개소, 홀 등	노인생활실 5개소, 화장실 1개소, 홀 등

2. 화재상황

가. 화재 발생 시 상황

화재 발생 당시 1층 홀에서 잠을 자던 최씨(사회복지사)는 매캐한 냄새가 나서 일어나보니, 사무실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시 인근 포스코기술연구소 경비원(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약 50m 거리)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다시 요양센터로 돌아와 1층에 깨어 있던 노인 1명을 구조하고 다시 요양센터로 들어가려 했으나, 연기 발생이 너무 많아 들어가지 못하고 소방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스코기술연구소 경비원은 최씨의 신고를 받고 소방서가 아닌 포스코기술연구소 소속의 소방대원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동 소방대원은 화재상황을 확인 후 119에 신고하였다.

<시간대별 경위>

- 04:15 경 : 최씨가 포스코기술연구소 경비원에게 알림
- 04:15 경 : 경비원이 포스코기술연구소 소속 소방대에게 신고
- 04:24 경 : 포항 남부소방서 상황대에 화재신고 접수
- 04:29 경 : 선착대 도착
- 04:40 경 : 초진
- 04:54 경 : 완진



[사진 1] 인덕노인요양센터 전면의 상황



[사진 2] 인덕노인요양센터 후면 및 우측면의 상황



[사진 3] 1층 사무실측 방향의 연소상황



[사진 4] 1층 출입구에서 본 연소상황

포항 남부소방서 선착대가 04:29경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화염은 크지 않았으며, 건물 전면 출입구 등을 통해 상당량의 검은 연기가 외부로 분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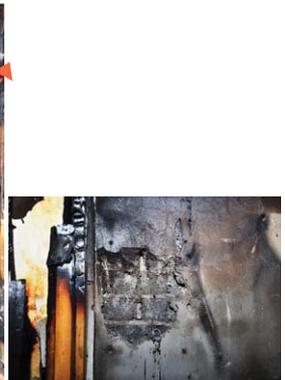
[사진 5] 1층 사무실, 분전반 방향의 연소상황



[사진 6] 1층 사무실, 출입구 방향의 연소상황



[사진 7] 사무실 분전반 주위의 연소상황(표지는 분전반 설치 위치)



[사진 8] 분전반의 전선 인입구 부분의 연소상황 (추정 발화지점)

화재는 1층 사무실 출입문 대각선 반대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분전반(상부 1개소, 하부 1개소) 주위에서 발생하여, 1층 사무실과 중앙 홀의 천장 및 상부 벽체 등의 일부를 연소시켰다. 사무실 내에 비치된 의자,

목조 구조물 등에 의해 발생한 상당량의 유독성 가스가 중앙 홀을 거쳐 1층 노인생활실로 유입되었다.

1층의 각 노인 생활실은 연소된 흔적은 극히 적었으며, 천장 및 벽체 부분에 상당량의 그을음 현상이 보이는 상태였다. 1층 사무실 내측 분전반 주위를 제외한 기타부분에서는 발화지점 또는 발화원인으로 볼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연소확대 경위

동 인덕노인요양센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2층 건물이고, 1층 사무실 내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무실의 집기(책상, 책장, 의자 등)를 태우고 사무실 외부로 분출되었으나, 사무실 외부 중앙 홀의 연소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1층에 위치한 노인생활시설 2개소는 연소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유리창 1개소의 파손흔적과 상부, 벽체 및 침구류 등에 그을음 현상이 발견되었다. 1층과 2층은 방화문으로 구획된 상태(1층 복도에서 2층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이며, 동 방화문은 닫혀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독성 가스 및 그을음이 2층 거실로 유입된 양은 상당히 적었다.



[사진 13] 1층-2층으로 통하는 계단측 복도의 상황



[사진 14] 1층 복도 출입문 주위의 상황



[사진 15] 2층 노인생활실 주위의 상황



[사진 16] 2층 노인생활실 중앙 홀의 상황

다. 피난경로

1층 전면부에 2개(중앙부분 1개소, 좌측부분 1개소)의 출입구, 후면부에 창고를 통해 외부로 연결되는 1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1층과 2층 사이 계단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층에서 실질적으로 피난 가능한 출입구는 건물 전면 중앙부분의 출입구 1개소이며, 좌측 출입구는 복도를 통해 설치되어 있고 후면 출입구는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외부로 피난하기 까지 2개의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피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었다. 또한 2층 복도에서 1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출입문(알루미늄 봉으로 제작됨)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 계단 측에서 폐쇄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사진 9] 1층 제①노인생활실 출입구 주위 연소상황



[사진 10] 1층 제①노인생활실 내부의 상황



[사진 11] 1층 제②노인생활실 출입구 주위 연소상황



[사진 12] 1층 제②노인생활실 내부의 상황



[사진 17] 화재현장의 전면에서 출입구 2개소 설치됨



[사진 18] 건물 후면에 출입구 1개소 설치됨



[사진 19] 건물 전면의 좌측 출입구



[사진 20] 전면 좌측 출입구의 개폐장치



[사진 21] 2층에서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



[사진 22] 1층 계단에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됨

3. 문제점과 대책

가. 초기 신고 지연

화재발생 인지 이후, 인근 포스코기술연구소 경비실에 화재사실을 알린 후(04:15 경), 관할 소방서에 신고 되기까지 약 9분이 소요되었으며, 관할 포항 남부 소방서 도착시간은 04:29 경으로 화재인지 후 약 15~20분 후이다. 신속히 소방서에 신고를 했을 경우, 약 9분이 단축되어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노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화재 발생 시 행동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요구된다.

나. 관리인력 부족

화재발생 당시 관리인은 1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면 중인 중증치매 및 중풍노인 27명을 신속하게 피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요양센터 등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에는 화재 발생을 신속히 관할 소방서 등에 통보가 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개념의 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소방시설 미비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인덕노인요양센터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등 경보설비의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소화설비가 설치가 되어있으며 정상 관리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화재가 확산되어 많은 사망자를 배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화재발생 시 피난이 불가능한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인 만큼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소화설비에 대한 설치의 검토가 요구된다.

라. 피난시설 미흡

동 인덕노인요양센터는 화재발생 당시 실질적으로 피난 가능한 출입구는 전면 중앙부분에 설치된 주출입구 밖에는 없었다. 전면 좌측 출입구의 잠금 장치는 출입문 상부에 설치되어 2층의 노인들이 1층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피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2층에서 1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도 1층 계단측에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각 층 피난구에 설치되는 피난문은 내부에서 외부로 개방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㉞

